

2027년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

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‘주민제안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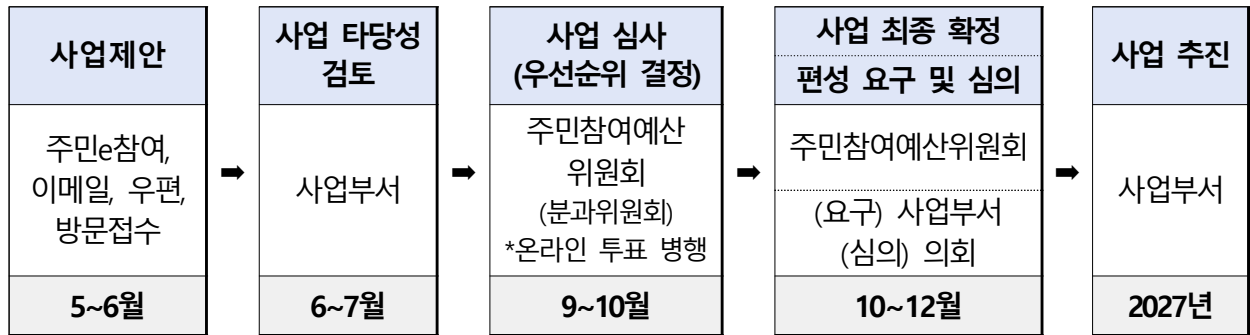
2026년 5월 4일

부 천 시 장

1. 공모기간 : 2026. 5. 4. ~ 6. 30.
2. 참여대상 : 부천시민, 부천시 소재 사업체에 소속된 사람, 학교 재학생 등
3. 공모규모 : 총 15억 원
4. 사업내용 : 주민 안전, 지역 생활 불편 개선, 주민복지 증진 등 주민 편익 사업
5. 사업유형
 - 주민계획형 : 동 지역회의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제안한 생활밀착형 편익 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※ 제안 주체별 한도액 상이
 - 일반공모형(사업별 1억 원 이하)
 - : 일반시민이 제안한 시·구 단위의 정책적 성격을 가지며 권역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
6. 제안방법 ※ 이메일, 우편 제출 후 접수 확인을 위해 담당자 연락 필수(☎ 032-625-2526)
 - 홈페이지 : 주민e참여(<https://pb.lofin365.go.kr/BUCHEON/main>)
 - 온라인 사업제안 경로: 부천시 주민e참여 접속 → 예산사업제안 → 공모제안(본인인증 후 신청)
 - 방 문 : 시청 예산법무과 예산팀, 구청 행정지원과, 동 행정복지센터
 - ※ 평일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 가능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이 메 일 : thdud5732@korea.kr
 - 우 편 : (14547)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(중동), 부천시청 예산법무과(10층)
 - ※ 이메일 및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
7. 제출양식 :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
8. 제출서류 : (별지)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

9. 제안사업 선정절차

※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가능하며, 기한 내 미응답 시 부적격 처리

10. 유의사항

- 제안사업은 사업부서 검토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또는 미반영 될 수 있음

※ 부서·유관기관 검토 의견 추진불가 시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안건 배제

- 아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 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

-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, 국·도비 보조사업
- 타기관 소관 사업(경찰서, 소방서, 교육청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
- 지역 축제 및 행사성 사업, 인건비·법적경비·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
- 유지보수나 사후 관리가 어려운 단순 소모성 사업
- 단순 생활민원성 사업으로 즉시 소관부서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
-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의 신규, 증액 요구
-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
- 공공청사(구청,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 등) 기능보강사업
-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 사업
-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
-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- ※ 학술용역 심의, 타당성 평가 등 법정 사전절차 필요 시 완료 후 편성 가능
- 기존 사업과 중복 또는 사업부서 연간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사업
- ※ 사업부서 자체사업 추진 여부 등 반드시 협의 필요

-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도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중복 제안 시, 최초 접수된 제안 인정
- 주민제안사업 신청은 ‘주민제안사업 신청서’ 서식에 따라 작성 필수
-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예산법무과 예산팀(☎032-625-2526)으로 문의

참고

주민제안사업 심사표

제안사업 평가표[안]

사업명	제안동/사업명	사업유형	동주도/동연합/ 광역연합/일반공모
사업부서		소요예산 (천원)	

□ 배점(총 50점)

※ ✓표시 및 우측 항목별 점수 기입 후 총점 산출

항목	배점	검토사항	배점구분										점수
			←그렇지 않다					매우 그렇다→					
			1	2	3	4	5	6	7	8	9	10	
안전성	10	· 주민의 생명·신체 보호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인가? · 주민의 생활안전(교통, 범죄, 재난 등) 개선 효과가 있는가?											
필요성	10	· 지역 내 안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가 높은가? · 다수 주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?											
시급성	10	· 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가? ·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가?											
실현 가능성	10	· 예산 및 행정절차상 추진이 가능한가? ·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?											
지속 가능성	10	· 사업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? ·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인가?											
총 점													

□ 종합(검토)의견

※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조정 의견 작성

2026. . .

본과위원회

(성명)

(서명)

정자로 기재